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시 정 요 구

제 목 정보보안대책 미수립 등 정보보안 업무 추진 소홀

기 관 명 충청남도 부여군

내 용

충청남도 부여군 ○○○○과에서는 국가안보 및 국가이익 관련 정보(전자 정보를 포함한다)와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안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.

「전자정부법」 제56조에 의하면 전자정부의 구현에 필요한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, 전자문서를 보관·유통할 때 위조·변조·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 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,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에 따르면 휴대용 저장매체의 보안 관리에 관련된 사항은 「○○○ ○○○ ○ ○○ ○ ○○○○ ○○○○○○」을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.

그러나 부여군 ○○○○과에서는 ○○○ ○○○ 등 휴대용 저장매체의 보안관리를 위해 2008년부터 보안USB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보보안업무를 추진하였으나, 2016년 3월 전산실 이전 및 장비 노후화에 따라 유지보수를 체결하지 못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보안USB 관리시스템을 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, ○○○○○○○○을 수립하여 ○○○ 이상 ○○○○○ 점검하고 ○○○ ○○○ 사항에 대하여 발굴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○○○○ 등으로부터 통보되는 ○○

○에 대해서만 조치하였고, PC 자료의 정보보안을 위하여 ○○○○○에서 배포한 ○○○○○○를 설치하여 PC의 정보보안을 추진하였으나 2016.6.30. 이 후 기존에 설치한 버전에 대하여 기술지원이 종료되고 ○○○ ○○ ○○되어 예산 반영 등의 문제로 감사일 현재까지 ○○○ ○○○ 설치·운영 등 ○○ ○○○○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.

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정보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정보보안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.

조치할 사항 충청남도 부여군수는

[시정] 정보보안 대책을 계획을 수립하고 휴대용 저장매체와 웹서버, PC 등의 정보보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라며,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